

외국의 지방세관련 평가지표

- 일본을 중심으로 -

이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복식부기센터소장

I. 서 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은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즉, 재산과세(재산세, 부동산세 등), 소득과세(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소비과세(지방소비세, 레저세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로 세율과 세원이 각종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약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세의 분석과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Standard & Poor's 사의 신용평가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분석하는데 있어 인구, 소득, 고용기반 등과 함께 과세기반을 평가하는데, 이 경우 세원의 규모, 세원의 구조, 세원의 다양성 등을 통해 과세기반(tax base)을 분석한다. (미) ICMA의 재정추이평가체제(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에서는 세입분석에서 탄력적 조세수

입, 재산세수입, 체납재산세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세징수율이 낮고 조세징수액이 계속 감소하는 등의 추세분석이 나타나면 재정적 문제에 대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재정의 여건과 관련하여 수입전망의 추세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자주재원의 기본적 요소로서 지방세수의 전망이 이루어지게 되며, 재정분석지표로서 1인당 지방세수력(지방세징수액/인구수), 지방세징수율(징수액/부과액)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방소비세의 한 형태로 1999년에 지방주행세 도입(교통세의 11.5%를 지방에 이양), 2000년에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화(지방교육세 도입), 과세대상확대(취득세, 레저세 등),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2005년) 등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지방세 분

석·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통계 및 주요 재정제도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세관련 평가지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일본도 다른 국가와 같이 지방세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 1>에서와 같이 주요 재정지표의 분석, 유사단체와의 비교분석, 종합적인 자기재정진단제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평가하면서 지방세 수입상황, 지방

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 세수증가율, 징세비용 등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결산통계자료

지방재정통계연보, 결산개황, 결산통계조사에서는 주로 결산수지, 세입, 세출, 자금수지, 장래에 걸친 재정부담 등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행하고 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결산통계에서는 지방세의 징수 실적 및 세목별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분석할 수가 없으므로 종합적이고 편리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재정분석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능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자료의 제공이 요구된다.

재정분석의 기준으로는 재정구조의 건전

<표 1> 일본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세 관련 주요 조사대상

구 분	주요 조사항목	
지방재정통계연보	- 지방세 등의 수입상황	
결산개황	- 도부현세의 수입상황	- 시정촌세의 수입상황
결산통계조사	- 도부현세의 수입상황 * 결산상황조서	- 도시별/정촌별 세입내역
재정지수표	- 세수입(稅收入) 상황 * 유사단체비교분석	- 세목별 징수상황표
5단계상대평가표	- 세수(稅收)증가율(현황지표) - 징세비용율(현황지표) - 유사단체비교 징세비용율(운영지표)	- 납세의무자비율(현황지표) - 시정촌세징수율(운영지표) * 재정상황지표
지방재정의 상황 (지방재정백서)	- 세입 대비 지방세의 비율 - 지방세징수율 - 법정외목적세의 상황 - 지방세체납액의 상황	- 전년도 대비 증감률 - 법정외보통세의 상황 - 초과과세의 상황

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재정구조의 탄력성, 세입세출비목의 건전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지표로는 실질수지비율, 재정력지수, 공채비 부담비율, 경상수지비율, 공채비비율, 기채 제한비율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자치성에서 매년도 결산통계를 기준으로 재정지표를 작성하여 어떤 자치단체가 재정분석을 하고자 할 때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유사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으로서 여기서는 재정지수표(財政指數表)를 사용하고 있다. 도도부현 재정지수표는 각 단체의 재정규모를 인구1인당 금액, 구성비 혹은 증가율 등에 의해 비교하는 것이다. 한편, 유사단체별 시정촌 재정지수표는 도시 및 정촌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액의 적자나 재해 등의 특수사정이 없는 표준적인 재정운영을 수행하

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들 단체의 재정지수의 평균치를 각 유형별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정지수의 평균치와 자기의 재정상의 수치와를 비교검토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세수입의 경우 징수상황표에 의해 지방세징수율을 비교하고 이외에 세목별 구성상황을 비교하고 다음으로는 “세율 및 납세의무자수의 상황표에 의해 소득할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각 세원에 대해 당해 시정촌의 특징을 표시함과 동시에 세목별 표준세수입액과 비교함으로써 과세표준의 파악에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2. 지방재정의 상황(지방재정백서)

지방재정의 상황(지방재정백서)에서는 재

<표 2> 법정외보통세의 상황

(단위 : 백만엔)

구 분		현년도(2002)		전년도(2001)		비교	
		단체수 (A)	수입액 (B)	단체수 (C)	수입액 (D)	단체수 (A)-(C)	증감액 (B)-(D)
도부 현세	석유가격조정세	1	940	1	926	-	14
	핵 연 료 세	11	14,709	11	13,936	-	773
	핵연료물질등취급세	1	5,947	1	12,392	-	△6,445
	핵연료등취급세	1	1,409	1	925	-	484
	임시특례기업세	1	152	-	-	1	-
	합 계	15	23,157	14	28,179	1	△5,022
시정 촌세	사리채취세	3	24	3	48	-	△24
	산(山)사리채취세	1	25	-	-	1	-
	별장등소유세	1	537	1	536	-	1
	합 계	5	585	4	584	1	1

자료 :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の状況, 2004.

<표 3> 법정외목적세의 상황

구분		현년도(2002)		전년도(2001)		비교	
		단체수 (A)	수입액 (B)	단체수 (C)	수입액 (D)	단체수 (A)-(C)	증감액 (B)-(D)
도부 현세	숙박세	1	496	-	-	1	-
	합 계	1	496	-	-	1	-
시정 촌세	유어세(遊漁稅)	3	40	-	-	3	-
	일반폐기물매립세	1	24	-	-	1	-
	합 계	4	64	-	-	4	-

자료 :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の状況, 2004.

<표 4> 초과과세의 상황

(단위 : 백만엔)

구분		현년도(2002)		전년도(2001)		비교	
		단체수 (A)	수입액 (B)	단체수 (C)	수입액 (D)	단체수 (A)-(C)	증감액 (B)-(D)
도부 현세	도부현민세법인균등할	1	4,776	1	1,117	-	3,659
	도부현민세법인세할	46	76,537	46	92,689	-	△16,152
	사업세 법인분	7	77,492	7	94,313	-	△16,821
	합 계	-	158,805	-	188,119	-	△29,314
시정 촌세	시 정 촌 민 세	1,446	199,842	1,450	241,074	△4	△41,232
	-개인균등할	18	20	17	20	1	-
	-소득 할	-	-	-	-	-	-
	-법인균등할	554	13,576	560	14,058	△6	△482
	-법인세할	1,430	186,247	1,433	226,996	△3	△40,749
	고 정 자 산 세	275	41,710	276	41,470	△1	240
	-토 지	275	12,809	276	12,820	△1	△11
	-가 옥	275	18,238	276	17,684	△1	554
	-상 각 자산	274	10,663	275	10,966	△1	△303
	경 자 동 차 세	30	468	29	457	1	11
	광 산 세	12	5	13	14	△1	△9
	입 탕 세	2	26	2	24	-	2
	구법에 의한 세	-	-	-	-	-	-
	합 계	-	242,051	-	283,039	-	△40,988

자료 :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の状況, 2004.

정통계와 함께 지방세 수입상황으로서 법정
외세(보통세, 목적세)의 상황, 초과과세의 상
황, 지방세징수율 및 세수증감률 등에 관한
지표를 통계자료로 공표하고 있다.

(1) 법정외보통세의 상황

도부현세 및 시정촌세별로 법정외보통세
의 단체수와 수입액 증감상황을 표시한다.

<표 5> 지방세징수율의 추이

(단위 : %)

구 분		현년도 과세분	체납이월분	합 계
도부현세	1997년	98.3	29.3	95.5
	1998년	98.5	28.1	95.4
	1999년	98.4	24.0	95.2
	2000년	98.6	22.5	95.5
	2001년	98.6	21.8	95.6
	2002년	98.4	21.4	95.0
시정촌세	1997년	97.8	18.9	92.9
	1998년	97.8	18.1	92.5
	1999년	97.8	17.7	92.3
	2000년	97.9	17.2	92.0
	2001년	97.9	16.9	92.0
	2002년	97.8	16.5	91.8

자료 :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の状況, 2004.

<표 6> 도부현세의 수입상황

(단위 : 백만엔, %)

구 분	현년도(2002)			전년도(2001)			비교	
	조정액 (A)	수입액 (B)	징수율 (B/A) ×100	조정액 (C)	수입액 (D)	징수율 (D/C) ×100	증감액 (E=B-D)	증감률 (E/D) ×100
1. 보통세	12,751,685	12,230,203	95.0	14,418,409	13,888,918	95.6	△1,658,715	△11.9
(1)법정보통세	12,728,528	12,207,046	94.9	14,390,230	13,860,739	95.6	△1,653,693	△11.9
①도부현민세	3,702,463	3,452,836	93.3	4,635,031	4,382,432	94.6	△929,596	△21.2
-개인분	2,559,275	2,323,655	90.8	2,607,170	2,369,299	90.9	△45,644	△1.9
-법인분	740,565	726,558	98.1	851,473	836,745	98.3	△110,187	△13.2
-이자할	402,624	402,624	100.0	1,176,388	1,176,388	100.0	△773,764	△65.8
②사업세	3,758,028	3,675,109	97.8	4,413,588	4,328,217	98.1	△653,108	△15.1
-개인분	249,577	222,363	89.1	254,672	226,404	88.9	△4,041	△1.8
-법인분	3,508,451	3,452,746	98.4	4,158,916	4,101,813	98.6	△649,067	△15.8
③지방소비세	2,424,524	2,424,524	-	2,474,477	2,474,477	-	△49,953	△2.0
-양도할	2,030,174	2,030,174	-	2,080,731	2,080,731	-	△50,557	△2.4
-화물할	394,350	394,350	-	393,745	393,745	-	605	0.2
④부동산취득세	617,160	523,991	84.9	635,783	537,460	84.5	△13,469	△2.5
⑤도부현담배세	270,669	270,530	99.9	276,870	276,792	100.0	△6,262	△2.3
⑥골프장이용세	76,810	74,385	96.8	80,760	78,909	97.7	△4,524	△5.7
⑦특별지방소비세	5,144	437	8.5	7,288	1,096	15.0	△659	△60.1
⑧자동차세	1,862,141	1,773,706	95.3	1,856,377	1,771,359	95.4	2,347	0.1
⑨광구세	480	441	91.9	504	467	92.7	△26	△5.6
⑩수렵자등록세	1,626	1,626	100.0	1,672	1,672	100.0	△46	△2.8
⑪고 정 자산세	9,482	9,459	99.8	7,879	7,857	99.7	1,602	20.4
(2)법정외보통세	23,157	23,157	100.0	28,179	28,179	100.0	△5,022	△17.8
2. 목적세	1,644,589	1,573,222	95.7	1,717,564	1,641,279	95.6	△68,057	△4.1
(1)법정목적세	1,644,092	1,572,726	95.7	1,717,564	1,641,279	95.6	△68,553	△4.2
①자동차취득세	419,894	419,094	99.8	449,728	449,599	100.0	△30,505	△6.8
②경유거래세	1,223,024	1,152,458	94.2	1,266,638	1,190,483	94.0	△38,025	△3.2
③입렵(入獵)세	1,174	1,174	100.0	1,198	1,198	100.0	△24	△2.0
(2)법정외목적세	496	496	100.0	-	-	-	496	-
3. 구법에 의한 세	904	48	5.3	1,116	76	6.8	△28	△36.8
합 계	14,397,178	13,803,473	95.0	16,137,090	15,530,274	95.6	△1,726,801	△11.1

주 : 징수율은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の状況, 2004.

(2) 법정외목적세의 상황

도부현세 및 시정촌세별로 법정외목적세의 단체수와 수입액 증감상황을 표시한다.

(3) 초과과세의 상황

도부현세 및 시정촌세별로 초과과세의 단체수와 수입액 증감상황을 표시한다.

(4) 지방세징수율의 추이

도부현세 및 시정촌세별로 현년도과세분과 체납이월분에 의해 6개 연도의 지방세징수율 추이를 분석한다.

(5) 도부현세의 수입상황

도부현세에 대해 각 세목별로 지방세징

<표 7> 시정촌세의 수입상황

(단위 : 백만엔, %)

구 분	현년도(2002)			전년도(2001)			비교	
	조정액 (A)	수입액 (B)	징수율 (B/A) ×100	조정액 (C)	수입액 (D)	징수율 (D/C) ×100	증감액 (E=B-D)	증감률 (E/D) ×100
1. 보통세	19,534,174	17,920,854	91.7	19,956,699	18,356,030	92.0	△435,176	△2.4
(1)법정보통세	19,533,486	17,920,268	91.7	19,956,017	18,355,446	92.0	△435,178	△2.4
①시정촌민세	8,400,276	7,770,867	92.5	8,821,294	8,184,593	92.8	△413,726	△5.1
-개인균등할	128,704	117,130	91.0	128,546	117,137	91.1	△7	△0.0
-소 득 할	6,332,957	5,772,458	91.1	6,445,922	5,879,071	91.2	△106,613	△1.8
-법인균등할	402,861	386,702	96.0	409,358	394,054	96.3	△7,352	△1.9
-법 인 세할	1,535,752	1,494,577	97.3	1,837,467	1,794,332	97.7	△299,755	△16.7
②고 정 자 산세	10,053,648	9,155,086	91.1	10,022,048	9,153,238	91.3	1,848	0.0
-순고정자산세	9,967,046	9,068,484	91.0	9,933,940	9,065,131	91.3	3,353	0.0
·토지	4,000,167	3,615,708	90.4	4,111,284	3,726,651	90.6	△110,943	△3.0
·가옥	4,162,004	3,758,692	90.3	3,998,690	3,620,551	90.5	138,141	3.8
·상각자산	1,804,875	1,694,083	93.9	1,823,967	1,717,928	94.2	△23,845	△1.4
-교 부 금	86,602	86,602	100.0	88,107	88,107	100.0	△1,505	△1.7
③경자동차세	150,255	135,229	90.0	144,042	130,153	90.4	5,076	3.9
④시정촌담배세	831,916	831,369	99.9	851,043	850,866	100.0	△19,497	△2.3
⑤광 산 세	1,377	1,377	100.0	1,512	1,512	100.0	△135	△8.9
⑥특별도지보유세	96,013	26,341	27.4	116,078	35,084	30.2	△8,743	△24.9
(2)법정외보통세	687	585	85.2	682	584	85.6	1	0.2
2. 목적세	1,794,000	1,654,192	92.2	1,801,753	1,662,449	92.3	△8,321	△0.5
(1)법정목적세	1,793,936	1,654,128	92.2	1,801,753	1,662,449	92.3	△8,321	△0.5
①입탕세	26,347	24,797	94.1	25,506	24,068	94.4	729	3.0
②사 업 소세	331,385	324,260	97.8	324,703	318,091	98.0	6,169	1.9
③도시계획세	1,436,106	1,304,975	90.9	1,451,405	1,320,154	91.0	△15,179	△1.1
④수리지역세	98	96	98.0	139	136	97.8	△40	△29.4
(2)법정외목적세	64	64	100.0	31	31	100.0	33	106.5
3. 구법에 의한 세	-	-	-	0	-	-	-	-
합 계	21,328,174	19,575,045	91.8	21,758,483	20,018,509	92.0	△443,463	△2.2

자료 :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の状況, 2004.

수율(현연도 및 전연도)과 세수증감률을 공표하고 있다.

(6) 시정촌세의 수입상황

시정촌세에 대해 각 세목별로 지방세징수율(현연도 및 전연도)과 세수증감률을 공표하고 있다.

Ⅲ. 지방세관련 분석·평가지표

일본의 지방세관련 분석·평가지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5단계 상대평가법(재정상황진단)과 과세상황의 분석을 중심으로 산식, 지표의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5단계 상대평가법에 의한 지방세관련 평가지표

5단계 상대평가법은 객관적인 재정상황의 자기진단표(현황지표진단), 재정운영에 관한 노력상황의 자기진단표(운영지표진단), 스톡상황의 자기진단표(스톡진단지표)의 3개의 진단표로 구성된다.

(1) 세수(稅收)증가율

① 산식

$$\text{세수증가율(\%)} = \frac{\text{당해년도세수액} - \text{전년도세수액}}{\text{전년도세수액}}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현황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세수입의 증가율을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면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비율

① 산식

$$\text{납세의무자비율(\%)} = \frac{\text{소득할 납세의무자수} + \text{균등할 납세의무자수} + \text{소득할 및 균등할 납세의무자수}}{\text{주민기본대장인구}}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현황지표로서 해당단체의 인구 중에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객관적으로 재정의 현황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3) 징세비용율

① 산식

$$\text{징세비용율(\%)} = \frac{\text{징세비}}{\text{지방세수입액}}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현황지표로서 징세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세정효율성 면에서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상의 현황지표에 의한 지방세 평가지표의 적용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지방세관련 평가지표 적용사례(현황지표)

항목	평균(Mean)	표준편차 (SD)	최대치	최소치	범위
세수증가율 %	8.78	10.17	256.09	△32.46	288.55
납세의무자비율 %	36.16	5.37	98.13	11.35	86.78
징세비용율 %	8.11	4.79	61.08	0.43	60.64

(4) 시정촌세징수율

① 산식

$$\text{시정촌세징수율}(\%) = \frac{\text{시정촌세수입액}}{\text{시정촌세조정액}}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운영지표로서 시정촌세는 시정촌 세입 중 가장 중요한 수입이고 주민의 부담능력에 따라 또는 그 수혜이익에 따라 지방세가 징수되는 것은 주민부담의 행정서비스에 의한 환원을 통하여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시정촌세가 세입에서 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입구조가 안정적임과 동시에 독자적인 행정시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징수율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를 위한 책무이행과 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5) 유사단체비교 징세비용율

① 산식

$$\text{징세비용율}(\%) = \frac{\text{시정촌 징세비}}{\text{시정촌 세수입(稅收入)액}}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운영지표로서 앞에서 기술한 징세비용율

<표 9> 유사단체 지수표에 의한 징세비용의 상황

유형	항목	징세비용(*)	징세비용율(%)		
			중위수 (Median)	최고	최저
도시	0-0	772	9.2	12.7	3.8
	0-1	673	6.6	10.0	4.4
	0-2	514	5.2	9.3	2.6
	0-3	575	5.9	10.4	2.8
	0-4	401	4.3	6.0	3.0
	0-5	526	4.7	13.2	4.5

주 1) 징세비용(*) = (징세비/지방세) × 10,000

2) 징세비용율(%) = (징세비/세수입액) × 100

<표 10> 지방세관련 평가지표의 재정상황진단표 양식

현황지표			운영지표			스톡지표
항목	전년도	당해년도	항목	전년도	당해년도	
세수증가율(%)	8.78	8.99	시정촌세 징수율(%)	95.15	96.33	해당지표 없음
납세의무자비율(%)	36.16	37.14	징세비용률(%) (유사단체비교)	5.21	5.97	
징세비용률(%)	8.11	8.15				

(현황지표)을 당해단체와 규모가 유사한 단체와 비교함으로써 당해 자치단체의 징세노력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사단체비교 징세비용율과 관련하여 지표 적용사례를 도시 유형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앞에서 살펴 본 5단계 상대평가표에 의한 재정상황진단에서 사용되는 지방세관련 분석·평가지표에 관한 재정상황진단표의 양식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지방세관련 평가지표

지방세 분석은 일반적으로 각 세목별 결산액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과세상황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과세건수, 과세인원, 소득금액), 소득계층별 과세인원, 징수상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과세상황분석에서 사용되는 지방세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납기내수입액비율

2. 과세상황의 분석에 의한

① 산식

<표 11> 납기내 수입의 상황

세 목	납기내 수입된 건수비율(%)		납기내 수입된 금액비율(%)	
	현연도(2003)	전연도(2002)	현연도(2003)	전연도(2002)
법인도부현민세	82.1	81.4	95.5	94.9
법인사업세	83.5	82.5	96.9	96.4
개인사업세	75.3	74.5	82.6	81.8
부동산취득세	79.2	79.2	82.4	82.2
자동차세	70.0	69.7	68.8	68.3
자동차취득세	99.8	99.8	99.8	99.8
경유거래세	70.2	69.8	46.4	45.9
기타	97.6	93.6	98.4	98.3
합 계	74.6	70.0	84.3	83.4

주: 합계에는 개인의 도부현민세, 지방소비세는 제외됨

자료: 常田 淳, “道府縣税の課税状況の分析” (地方税 2005. 4)

<표 12> 연도내 수입의 상황

세 목	연도내 수입된 건수비율(%)		연도내 수입된 금액비율(%)	
	현연도(2003)	전연도(2002)	현연도(2003)	전연도(2002)
현연도과세분	98.2	98.3	98.8	98.4
-법인도부현민세	97.8	97.8	99.6	97.8
-법인사업세	99.2	99.0	99.8	99.7
-개인사업세	96.5	96.3	97.2	97.0
-부동산취득세	95.7	95.6	93.9	93.5
-자동차세	98.0	98.2	98.0	98.0
-자동차취득세	99.9	99.8	99.9	99.8
-경유거래세	97.9	97.7	97.8	97.7
-기타	99.9	99.9	99.9	99.8
체납이월분	24.9	24.4	25.2	21.4
합 계	94.9	95.0	96.5	96.2

주: 합계에는 개인의 도부현민세, 지방소비세는 제외됨

자료: 常田 淳, “道府縣税の課税状況の分析” (地方税 2005. 4)

$$\text{납기내수입액비율(\%)} = \frac{\text{납기내에 납부납입된 금액}}{\text{현연도과세분의 조정총액}}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현연도과세분의 조정총액에 대해 납기내에 납부·납입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도부현세를 대상으로 납기내 수입된 건수와 금액을 표시하는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2) 연도내수입액비율

① 산식

$$\text{연도내수입액비율(\%)} = \frac{\text{연도내에 납부납입된 금액}}{\text{현연도과세분의 조정총액}}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현연도 과세분의 조정총액에 대한 연도

내에 납부·납입된 금액의 비율이다.

도부현세를 대상으로 연도내 수입된 건수와 금액을 표시하는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3) 미수납액비율

① 산식

$$\text{미수납액비율(\%)} = \frac{\text{재산차압, 체납처분정지, 징수유예 등으로 인해 미수납된 지방세액}}{\text{현연도과세분의 조정총액}} \times 100\%$$

② 지표의 의미

현연도 과세분의 조정총액에 대해 재산차압이나 체납처분의 정지, 징수유예 등으로 인해 미수납된 지방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도부현세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정지, 징수유예 등으로 인해 미수납된 건수와 금액

<표 13> 미수납액의 내역

구 분	2003년도			2002년도
	건수(건)	세액(백만엔)	구성비(%)	구성비(%)
-재 산 차 압 액	271,013	65,196	21.7	19.1
-환 가 유 예 액	8,833	4,688	1.6	1.6
-체납처분정지액	572,791	39,451	13.2	13.7
-징 수 유 예 액	49,733	29,258	9.8	12.6
-징 수 위 탁 액	3,069	284	0.1	0.1
-교 부 요 구 액	107,210	16,188	5.4	7.7
-분 납 서 약 액	318,773	24,234	8.1	6.8
-기 타	2,175,468	120,655	40.2	38.3
합 계	3,506,890	299,954	100.0	100.0

주: 합계에는 개인의 도부현민세, 지방소비세는 제외됨

자료: 常田 淳, “道府縣税の課税状況の分析” (地方税 2005. 4)

<표 14> 징송발생건수의 추이

연도	불복신청			소송		
	발생건수 (건)	부동산취득세		발생건수 (건)	부동산취득세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1998	623	342	54.9	53	20	37.7
1999	521	262	50.3	65	8	12.3
2000	652	324	49.7	67	14	20.9
2001	832	377	45.3	78	32	41.0
2002	753	388	51.5	65	19	29.2
2003	653	373	57.1	65	27	41.5

주: 합계에는 개인의 도부현민세, 지방소비세는 제외됨

자료: 常田 淳, “道府縣税の課税状況の分析” (地方税 2005. 4)

을 표시하는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표 13> 나타나고 있다(<표 14> 참조).
과 같다.

(4) 징송발생건수

조세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복신청이나 소송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과세객체인 토지나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과세청에 의해 평가되고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징송발생이 빈번하게

IV. 종합 및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관련 평가지표는 대부분 지방세 징수상황을 중심으로 세수성장성이나 세정효율성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외에 납기내·연도내 수입액비율, 미수납액비

<표 1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관련 분석·평가지표

지표	의미	비고
1. 세수증가률(%)	재정성장성 측정	5단계상대평가표
2. 납세의무자비율(%)	주민세납부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양호함	5단계상대평가표
3. 징세비용율(%)	세정효율성 측정	5단계상대평가표
4. 유사단체비교 징세비용율	징세노력도 비교 *징세비용, 징세비용율 측정	유사단체와의 비교
5. 지방세징수율(%)	세수확보노력 정도 측정	5단계상대평가표
6. 법정외세 상황조사	단체수 및 수입액 증감	지방재정백서
7. 초과과세 상황조사	단체수 및 수입액 증감	지방재정백서
8. 납기내·年度내 수입액비율(%)	납기내·연도내 수입된 건수 및 금액 측정	과세상황의 분석 (내부자료)
9. 미수납액비율(%)	체납처분정지, 징수유예 등 으로 인해 미수납된 건수 및 금액 측정	과세상황의 분석 (내부자료)
10. 쟁송발생건수	불복신청, 소송 등 납세관련 쟁송발생건수 측정	과세상황의 분석 (내부자료)

율, 쟁송발생건수 등 과세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지방세관련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표 15>와 같다.

앞에서 살펴 본 일본의 지방세관련 분석·평가지표를 통해 우리의 경우 지방세수 능력, 세수구조, 과세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정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를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독립적인 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적인 자체수입원으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성장잠재력을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다. 따라서 지방세를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재정현실에 적합한 분석모델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관련 분석·평가는 지방세의 구조분석과 함께 서비스편익에 비례하는 조세부담의 배분원칙, 지방세의 안정성, 조세탄력성과 성장성, 과세형평성, 효율성(징세노력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재정상태평가 또는 재정분석 측면에서 지방세의 징수상황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지방세수의 추이, 1인당 지방세액, 세수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징세비용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세의 실질적 세수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과세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강구하여 이들 분석평가결과를 제도개선과 정책방

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히, 우리의 경우 징세노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장치를 강구하고 최근에 주민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세관련 쟁송사건의 발생, 지방세체납 및 과오납상황 등에 대한 조사, 국가시책이나 정책유도적인 지표(예: 지방세수예측, 탄력세율 적용 등) 등을 포함하는 접근을 통해 정태적인 분석에서 동태적인 분석방법에 의해 지방세 제도와 운용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력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 워크샵자료, 2005.

常田 淳, “道府縣税の課税状況の分析”(地方税 20054)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の状況, 2004.

Berne, Robert and Richard Schramm.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s. Prentice-Hall. 1986.

Sanford M. & Valente, Maureen Godsey.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 Handbook for Local Government. ICMA. 1994

OECD, The Tax System in Japan: A Need for Comprehensive Reform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31, 2000. ☺

